

울산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19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 2. 1.
제 출 자 : 중 구 청 장

1. 개정이유

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한 정비과제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이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(2015. 8. 11. 전부개정)됨에 따라, 인용조문을 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”로 개정(안 제2조4호, 제10조, 제11조제2항)

3. 근거법규 :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

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: “따로 붙임”

5. 참고사항

- 가. 예산조치 사항 : 해당 없음
- 나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 없음
- 다. 성별영향분석 평가 : 개선사항 없음
- 라. 부패유발요인의 검토 : 해당 없음
- 마. 입법예고 사항 : 2016. 11. 14. ~ 12. 5.(의견 없었음)

울산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 「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」 ”을 “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”로 하고, “민원사무”를 “민원”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 「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」 ”을 “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”을 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”로 하고, “민원사무”를 “민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참고 1 법제처 「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」 정비과제 내용

- 목 적 : 자치법규 법령위반 미근거 규제 등 불합리한 사항 등 개선·조치
 - ※ 법제처 정비용 지원 절차 : 지자체 지원신청 → 법제처 검토 및 지원확정

- 권고내용 : 울산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

조항	현행 조례의 내용	문 제 점	개선 방안
제 2 조 제4호	“인터넷 민원”이란 「 <u>민원 사무처리에관한법률</u> 」 제2조에 따른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.	「 <u>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</u> 」은 「 <u>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</u> 」로 변경됨.	<u>법 률 제명 수정.</u>
제10조	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도록 「전자정부법」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며, 「 <u>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</u> 」시행령에 따라 운영한다.		

울산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(의안번호 1319)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 일자 : 2017. 2. 1.(수)
- 나. 제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7. 2. 2.(금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7. 2. 13.(월)

2. 제안설명 요지 (행정지원국장 김성규)

가. 제안이유

-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한 정비과제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(안 제2조제4호, 제10조, 제11조제2항)
 -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 ⇒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
 - 민원사무 ⇒ 민원

다. 근거법규 :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최영환)

-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정비과제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,
-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,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일부 경미한 자구 정리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.

4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5. 수정사항

- 안 제10조 중 “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”을 “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”로 한다.
- 안 제11조제2항 중 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”을 “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”로 한다.

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10조(전자민원창구 설치·운영)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도록 「전자정부법」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며, 「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」시행령에 따라 운영한다.	제10조(전자민원창구 설치·운영) ----- ----- ----- -----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-----.	제10조(전자민원창구 설치·운영) ----- ----- ----- -----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----- -----.
제11조(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) ① (생략) ②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,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·처리한다.	제11조(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----- ----- 민원 -----.	제11조(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----- ----- 민원 -----.